



문서번호	보건위생과-4530
결재일자	2016.3.16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공중위생팀장	보건위생과장	보건소장	
신경준	진철용	정주섭	03/16 김경희	
협조				

2016년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

2016. 3.



(보건위생과)

사 전 검 토 사 항

∴ 해당사항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항 목	검 토 여 부
사 업 구 분	신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약(약속)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인센티브/공모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
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구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전 문 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이해당사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여 성 친 화 도 시	성 평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안 전·편 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가 족·공 동 체 회 복 <input type="checkbox"/> 여 성 참 여 <input type="checkbox"/>
기 타 고 려 사 항	일 자 리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환 경 영 향 <input type="checkbox"/> 안 전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유 지 비 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바 른 공 공 언 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성 인 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취 약 계 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장 애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 자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 등 발 생 요 인 <input type="checkbox"/>
타 자 원 활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중 앙 부 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서 울 시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언 론 홍 보 계 획	기 획 보 도 <input type="checkbox"/> 보 도 자 료 <input type="checkbox"/> S D T V <input type="checkbox"/> 성 동 뉴 스 레 터 <input type="checkbox"/> 성 동 구 소 식 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고 문 <input type="checkbox"/> 전 자 행 정 서 비 스 <input type="checkbox"/> S N S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타 (리 플릿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없 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
● 홍 보 제 목 :

● 중점 홍보사항

-
-

※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'홍보제목'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2016년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

구민의 주 생활공간인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·관리하여 쾌적한 실내공기 환경을 구축, 구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

I 추진근거

-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(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)
- 2016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 통보(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)

II 추진대상

- 공중이용시설 정의
 -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
- 공중이용시설의 종류

종류	관련법	규모
업무시설	건축법	연면적 3,000m ² 이상
복합 건축물	건축법	연면적 2,000m ² 이상
학원	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	연면적 2,000m ² 이상
공연장	공연법	객석 수 1천석 이상
혼인 예식장	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	연면적 2,000m ² 이상
실내체육시설	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	관람석 1천석 이상

III 2015년 공기질 측정 실적

■ 측정기간: 2015. 7. 10. ~ 2015. 12. 18.

■ 측정대상: 237개소

- 공중이용시설 164 (업무시설 60, 복합건축물 98, 공연장 2, 체육시설 2, 예식장 2)
- 기타시설 73 (민간어린이집 73)

■ 측정결과: 237개소 적합

■ 종합평가

- 측정 건물은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측정항목 수치가 허용기준치에 적합
- 매년 실시되는 실내공기질 측정에 따른 쾌적한 실내공기 환경 중요성 등 건물주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
-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곳과 미세먼지 등 이산화탄소가 높은 시설물은 주기적으로 실내환기를 하도록 현장지도

IV 2016년 공기질 측정 계획

■ 측정자: 담당 공무원 및 공중위생감시원 2인 1조

■ 측정기간: 2016. 5. ~ 11.

■ 측정방법: 대상시설 방문 후 측정기기로 측정

■ 측정대상: 총 165개소(민간 어린이집 공기질 측정 타부서 이관)

총 계	공중이용시설(개소 수)				
	복합건축물	업무시설	공연장	체육시설	혼인예식장
165	98	61	2	2	2

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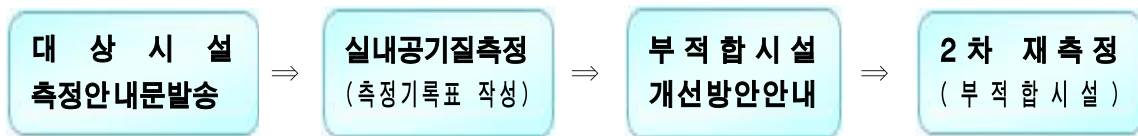
- 실내공기 유해물질 노출로 환경성 발암물질, 호흡기질환, 감염성질환 증가 추세

추진방향

- 관내 오염도 높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집중 관리
- 청결 및 위생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홍보 및 계도
- 시설관리자의 자율적인 시설 및 설비기준 준수 등 관리 역량 강화

측정절차

- 측정대상시설에 측정일정 사전 통보
- 부적합 시 실내공기질 개선 권고
 - 1차 부적합시설 재측정 및 개선권고 이행여부 확인
- 측정과정



측정항목

오염물질의 종류	오염허용기준	발생원인 및 유해성
미세먼지(PM-10)	24시간 평균치 150 $\mu\text{g}/\text{m}^3$	입자의 크기가 10 마이크로미터(100 만분의 1미터) 보다 미세한 분진이며 폐기능 저하
일산화탄소(CO)	1시간 평균치 25ppm 이하	불완전 연소 시 생성 산소결핍에 따른 각종 질환 유발
이산화탄소(CO ₂)	1시간 평균치 1,000ppm 이하	생물의 호흡 또는 발효 등에서 발생 되며 양이 증가하면 질환 유발
포름알데히드(HCHO)	1시간 평균치 120 $\mu\text{g}/\text{m}^3$ 이하	자극성 냄새를 갖는 가연성 무색 기체로 급성독성, 발암성 물질로 알려짐

V 소요예산

■ 공기질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: 1,220 천 원

○ 예산과목

- 보건위생과, 위생안전관리사업, 공중위생 안전관리,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, 공공운영비(201-02)

○ 산출기초: 1,220,000 원 × 1대 = 1,220,000 원

■ 공기질측정기 부품교체비: 380 천 원

○ 예산과목

- 보건위생과, 위생안전관리사업, 식품위생 안전관리,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, 공공운영비(201-02)

○ 산출기초: 380,000 원 × 1대 = 380,000 원

■ 명예감시원 활동비: 900 천 원

○ 예산과목

- 보건위생과, 위생안전관리사업, 공중위생안전관리,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, 기타보상금(301-11)

○ 산출기초: 50,000 원 × 1명 × 18일 = 900,000 원

V 행정사항

■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(분기별): 서울시 생활보건과

■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환경부 통합관리 (2016. 12. 23. 시행)

- 붙임 1. 공중이용시설 측정기록표 1부.
2.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방법 안내문 1부.
3.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현황(공중이용시설) 1부. 끝.